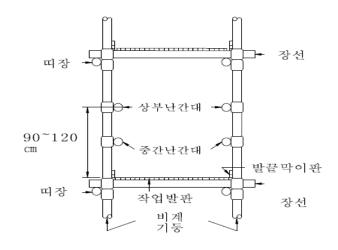
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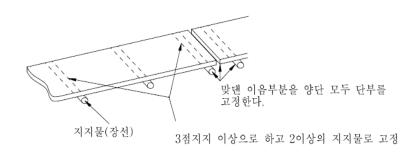
- (2) 비계에 설치하는 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(3) 안전난간은 <그림 5>와 같이 설치하며, 상부난간대는 바닥면, 발판,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이상 120cm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.



<그림 5> 안전난간의 설치(참조그림)10 경사로

7.10 경사로

(1)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 c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

<그림 6> 경사로 발판의 이음(참조그림)